

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21-259 호

이 조례(안)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
· 규칙심의회, 규제개혁 위원회 및 구의회 심의
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.

「서울특별시 중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「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.

2021년 4월 8일

서울특별시 중 구 청 장



「서울특별시 중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 일부개정(안) 입법예고

1. 개정이유

코로나19 피해로 긴급 운전자금이 필요한 관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市·자치구 협력 민생대책 《소상공인 저리 융자 지원》을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, 상위법 제정 및 「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」에 따른 기금 관련 공무원의 소속 행정기구명 변경 사항을 우리 구 관련 조례에 반영하여,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·운영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목적

- 상위법 폐지 및 제정에 따른 근거 법률명 변경

나. 기금의 용도

- 저리 용자 지원을 위한 출연금, 이차차액보전(이자지원)의 근거 규정 마련

다.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, 회계공무원

- 위원장, 기금운용관명 변경

3. 의견제출

이 조례 및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·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4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(참조 : 전통시장과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사유)

나. 성명(법인·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다. 의견서 제출 방법 : 전자우편, 우편 또는 팩스

1) 전자우편 : hrlee0526@junggu.seoul.kr

2) 주 소 : 서울특별시 중구 창경궁로 17 중구청 전통시장과

3) 전 화 : 02-3396-5043 (팩스 : 02-3396-8680)

붙임 : 서울특별시 중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.

서울특별시 중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중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자치법」 제142조, 「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62조의17에 따라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설치하고,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·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4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(기금의 용도)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.

1. 중소기업의 운전자금, 시설자금, 기술개발자금 용자
2.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출연금
3. 그 밖에 기금의 운용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의 발생 등으로 긴급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있다.

1. 중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용자에 대한 이차지원
2. 금융기관의 협력자금 용자에 대한 이차차액 보전

제6조의 제3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(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) ③ 위원장은 경제친화국장이 되고,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
제14조의 제2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4조(회계공무원) ② 기금운용관은 전통시장과장으로 하고, 기금출납원은 기금담당주사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자치법」 제142조, 「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」 제43조에 따라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설치하고,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·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제4조(기금의 용도)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<u>외</u>에는 사용할 수 없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중소기업의 <u>육성 발전을 위한 중소기업의 시설자금, 운전자금 및 기술개발자금의 용자</u> 2. 중소기업의 <u>육성 지원을 위한 사업비 출연</u> 3. (생략) <p style="text-align: right; margin-right: 20px;"><신 설></p>	<p>제1조(목적) ----- ----- 「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62조의17-----</p> <p>제4조(기금의 용도) ① ----- 용도에 사용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----- <u>운전자금, 시설자금, 기술개발자금 용자</u> 2. <u>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출연금</u> 3. (현행과 같음) <p>② <u>제1항에도 불구하고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3조 제1호에 따른 재난의 발생 등으로 긴급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있다.</u></p>

현행	개정안
<p>제6조(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) ① (생략)</p> <p>② (생략)</p> <p>③ 위원장은 <u>기획재정국장</u>이 되고,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</p> <p>④ (생략)</p> <p>⑤ (생략)</p> <p>제14조(회계공무원) ① (생략)</p> <p>② 기금운용관은 <u>일자리경제과</u>장으로 하고, 기금출납원은 기금담당주사로 한다.</p> <p>③ (생략)</p> <p>④ (생략)</p>	<p>1. <u>중구 중소기업육성기금</u> 용자에 대한 이차지원</p> <p>2. <u>금융기관의 협력자금</u> 용자에 대한 이차차액 보전</p> <p>제6조(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----- <u>경제친화국장</u>----- ----- -----.</p> <p>④ (현행과 같음)</p> <p>⑤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14조(회계공무원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<u>전통시장과</u>----- ----- -----.</p> <p>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④ (현행과 같음)</p>